

의안번호	제122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5. 6. 24.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출자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제출연월일	2015. 6. .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 제3조의2제2항제3호 위촉직 위원에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을 추가한다.

4. 검토의견

가. 구의회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서의견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 (개정안과 같음)	수정안 동의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위촉직위원은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촉직위원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을 포함한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재활용팀장이 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⑤ ~ ⑦ (개정안과 같음)	
⑧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개정안과 같음)	
제4조(기금·회계직 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회계직 공무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나.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강남구의회 수정사항이 기금운용에 있어 공정성을 기함에 있어 구의회에서 의결 이송되어온 수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5명”을 “6명”으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강남지부장으로 임명·위촉하여 운영한다”를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을 포함한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중 “청소행정팀장”을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u> <u>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u>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회)</p> <p>① (생 략)</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u>복지문화국장</u>, 부위원장은 <u>청소행정과장</u>이 되며, 위원은 <u>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강남지부장으로</u> 임명·위촉하여 운영한다.</p> <p><신 설></p> <p><신 설></p>	<p><u>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u> <u>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u>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6명</u> -----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p> <p>2.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p> <p>3.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을 포함한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p>

<p>③ (생 략)</p> <p>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이 된다.</p> <p>⑤ ~ ⑦ (생 략)</p> <p><신 설></p>	<p>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자원재활용팀장-----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⑧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문화국 청소행정과	
연 락 처	(02) 3423 - 5984